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40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0일

발 의 자 : 윤인숙 의원  
찬 성 자 : 박종호, 이재식,  
공기환, 이인락,  
임준희, 정순희,  
정택진 의원(7명)

## 1.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6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8. 21. ~ 2021. 8. 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p> <p>1.~ 5. (생략)</p> <p><u>&lt;신설&gt;</u></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 ----- ----- ----- ----- -----.</p> <p>1.~ 5. (현행과 같음)</p> <p>6.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u>단체</u></p>

## 관계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